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9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6. 10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개정이유

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배상책임 기준 및 안전사고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, 부속시설 종류 및 사용료 등을 현 상황에 맞게 반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속시설 종류에 대한 사항 현행화(안 제3조)
- 나.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추가(안 제4조)
- 다. 요금 반환규정의 구체화(안 제9조)
- 라.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 구체화(안 제11조)
- 마. 사용료 인상 및 부가가치세 삭제, 부속시설 종류 현행화(안 별표 1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 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제156조
 - (2)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4. 10. 4.~ 10. 24.) 결과 : 의견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부속시설 : 전기시설

제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 다음”을 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5근무 일 이내 다음”으로 한다.

제11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공연·행사에 관한 보험(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)에 가입하고 사용예정일 전까지 가입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사용자는 공연·행사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⑤ 사용자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사용료(제7조제1항 관련)

1. 기본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기 준	사용료	비 고
오전 (08:00~12:00)	90,000	○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%를 가산함 ○ 공연연습 또는 무대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 ○ 사용허가 시간에서 1시간 초과시 당일 다음 공연장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○ 공연준비,철수 등을 위해 23:00이후까지 사용할 때에는 야간 기준시간 초과시간 당 60,000원을 가산함 (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)
오후 (13:00~17:00)	120,000	
야간 (18:00~22:00)	180,000	
1일	250,000	

※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한다.

※ 1일 사용이란 오전, 오후, 야간을 모두 사용함을 말한다.

2. 부속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준	사용료	비 고
전기시설	1회	20,000	○ 공연 연습을 위한 전기시설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

※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한다.

※ 1일 사용이란 오전, 오후, 야간을 모두 사용함을 말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설의 종류)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-11에 있는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(이하 “공연장”이라 한다)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부속시설 : 음향시설, 조명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</u></p>	<p>제3조(시설의 종류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부속시설 : 전기시설</u></p>
<p>제4조(사용허가 및 사용료 선납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사용허가 및 사용료 선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</u></p>
<p>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<u>경우</u>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.</p>	<p>제9조(사용료의 반환) ----- ----- <u>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5근무일 이내</u> 다음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사용자의 배상책임) ① ~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1조(사용자의 배상책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공연·행사에 관한 보험(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)을 가입하고 사용예정일 전까지 가입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사용자는 공연·행사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사용자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사용료</p> <p>1. 기본시설 사용료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기 준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사용료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오전 (08:00~12:00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,000</td> <td rowspan="4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%를 가산함 ○ 공연연습 또는 무대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 ○ 사용자가 시간에서 1시간 초과시 당일 다음 공연장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○ 공연준비, 철수 등을 위해 23:00이 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60,000원으로 함(30분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) </td> </tr> <tr> <td>오후 (13:00~17:00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0,000</td> </tr> <tr> <td>야간 (18:00~22:00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0,0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(생략) ※ 1일 사용이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을 모두 사용함을 말한다. ※ 부가가치세 별도</p> <p>2. 부속시설 사용료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사용료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 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,000</td> <td rowspan="3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연 연습을 위한 조명 및 음향 사용 시 당해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 ○ 공연이 아닌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조명 사용료는 면제함 ○ 마이크 2대는 기본 사용, 추가 1대당 5,000원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음 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0,000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(생략) ※ 1일 사용이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을 모두 사용함을 말한다. ※ 부가가치세 별도</p>	기 준	사용료	비 고	오전 (08:00~12:00)	6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%를 가산함 ○ 공연연습 또는 무대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 ○ 사용자가 시간에서 1시간 초과시 당일 다음 공연장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○ 공연준비, 철수 등을 위해 23:00이 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60,000원으로 함(30분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) 	오후 (13:00~17:00)	90,000	야간 (18:00~22:00)	150,000	1일	200,000	구 분	기준	사용료	비 고	조 명	1회	1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연 연습을 위한 조명 및 음향 사용 시 당해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 ○ 공연이 아닌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조명 사용료는 면제함 ○ 마이크 2대는 기본 사용, 추가 1대당 5,000원 	음 향	1회	80,000		1일	150,000	<p>[별표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사용료(제7조1항 관련)</p> <p>1. 기본시설 사용료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기 준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사용료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오전 (08:00~12:00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0,000</td> <td rowspan="4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%를 가산함 ○ 공연연습 또는 무대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 ○ 사용자가 시간에서 1시간 초과시 당일 다음 공연장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○ 공연준비, 철수 등을 위해 23:00이 후까지 사용할 때에는 야간 기준 시간 초과시간 당 60,000원을 가산함 (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) </td> </tr> <tr> <td>오후 (13:00~17:00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0,000</td> </tr> <tr> <td>야간 (18:00~22:00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0,0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(현행과 같음) ※ 1일 사용이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을 모두 사용함을 말한다. ※ 삭제</p> <p>2. 부속시설 사용료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사용료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기시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000</td> <td>○ 공연 연습을 위한 전기시설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(현행과 같음) ※ 1일 사용이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을 모두 사용함을 말한다. ※ 삭제</p>	기 준	사용료	비 고	오전 (08:00~12:00)	9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%를 가산함 ○ 공연연습 또는 무대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 ○ 사용자가 시간에서 1시간 초과시 당일 다음 공연장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○ 공연준비, 철수 등을 위해 23:00이 후까지 사용할 때에는 야간 기준 시간 초과시간 당 60,000원을 가산함 (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) 	오후 (13:00~17:00)	120,000	야간 (18:00~22:00)	180,000	1일	250,000	구 분	기준	사용료	비 고	전기시설	1회	20,000	○ 공연 연습을 위한 전기시설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
기 준	사용료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오전 (08:00~12:00)	6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%를 가산함 ○ 공연연습 또는 무대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 ○ 사용자가 시간에서 1시간 초과시 당일 다음 공연장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○ 공연준비, 철수 등을 위해 23:00이 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60,000원으로 함(30분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오후 (13:00~17:00)	9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야간 (18:00~22:00)	15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일	2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준	사용료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조 명	1회	1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연 연습을 위한 조명 및 음향 사용 시 당해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 ○ 공연이 아닌 행사만을 위한 사용 시 조명 사용료는 면제함 ○ 마이크 2대는 기본 사용, 추가 1대당 5,000원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음 향	1회	8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일	15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 준	사용료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오전 (08:00~12:00)	9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30%를 가산함 ○ 공연연습 또는 무대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 ○ 사용자가 시간에서 1시간 초과시 당일 다음 공연장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○ 공연준비, 철수 등을 위해 23:00이 후까지 사용할 때에는 야간 기준 시간 초과시간 당 60,000원을 가산함 (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오후 (13:00~17:00)	1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야간 (18:00~22:00)	18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일	25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준	사용료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기시설	1회	20,000	○ 공연 연습을 위한 전기시설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□ 부가가치세법

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
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20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(無償)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